

골든 클럽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SNU NY Golden Club)이라 칭한다. 이하 골든클럽으로 약칭할 수 있다.

제 2 조(목적 및 뉴욕지역 동창회와의 관계)

- 1,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2, (뉴욕 동창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욕지역 동창회 협력기관으로, 운영과 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단 필요에 따라 뉴욕지역 동창회의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가족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 회원 중에서, 본회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본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가족회원) 가족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본회와 협조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자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임원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회원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가족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명예회원은 각종 행사와 총회 및 신년교례회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원 입회비와 연회비 의무를 면제한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정기 총회의 지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임 회장 선임이 지연될 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1, 회장: 1 인
- 2, 부회장: 약간 명- 부회장중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3, 사무총장
- 4, 감사

제 8 조(임원의 선임)

-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감사 등을 지명하고, 출석 과반수의 동의로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집행부 요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명예회장, 고문 및 상임고문)

1, 본회 회장으로 재임중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에 고문과 상임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상임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임원회에서 추대한 회원으로 한다.

3. 명예회장, 고문 및 상임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와 기관

제 11 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3) 결산의 승인

(4)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3 월, 신년교례회 때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SNS, E-mail 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응답 회원의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12 조(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및 결산서 작성

(2) 입회비 및 연회비의 결정

(3)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4) 기타 주요한 사항

2,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원회의에 필요한 회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13 조(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보 편집 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약간 명

2, 회칙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3, 운영 위원회: 본회의 주요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는 확대임원회의의 성격을 가지며 구성은 임원과 편집위원으로 한다.

제 14 조(이사회)

본 회에 이사회 구성이 필요할 경우 회장은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5 조(재무)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회계년도)

- 1, 본회의 회계 년도는 1 월 1 일로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 2,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기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 17 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이 필요할 시는 회칙 위원회와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기 중에는 SNS, E-mail 등에 의한 임시총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 18 조(부속 기관) 본회는 회원들의 건강, 교양, 취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골든클럽 컴퓨터 연구원: 원장 1 인과 뉴욕 지회장, 뉴저지 지회장
2. 골프회
3. 등산회

제 19 조(부칙)

1.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개정 회칙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총회나 임시 총회(SNS, E-mail 을 통한 의결)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일람.

회칙제정: 2012 년 4 월 1 일 회칙 제정

제 1 차 개정 2014 년 3 월 1 일 개정

제 2 차 개정 2017 년 7 월 1 일 개정

제 3 차 개정 2022 년 3 월 26 일 개정